

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0 - 86호

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

방송법 제9조제5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1월 10일

방송통신위원회

1. 승인 대상 방송사업

-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

2. 승인 신청 자격

-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(소유제한 등), 제13조(결격사유), 제14조(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)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

3. 승인심사 전 주요 절차

- 승인 신청요령 설명회 : 2010년 11월 12일

-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5층 대강당

- 승인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0년 11월 30일 09:00부터 2010년 12월 1일 18:00까지

- 접 수 처 : 방송통신위원회 신규방송사업정책TFT

※ 승인 신청서류 및 보정서류는 방문접수만 허용

○ 승인 신청서류 보정

- 보정서류 제출기한 : 2010년 12월 8일 18:00까지

- 보정 대상 : 부속서류 추가 제출, 날짜·단위·성명 등 오기·누락의 수정, 서명·날인의 보완 등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

※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(예를 들어, 주주구성의 변경 등)은 보정 불가

-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

4. 향후 추진일정

○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결과 확정·공표

- 2010년 12월 중 (예정)

※ 법정 심사기한 :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(방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)

5.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

○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

○ 선정된 신청법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, 법인등기부 등본,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(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)까지 제출하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장을 교부함

6. 유의사항 및 기타

○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

-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
- 상기 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

※ 승인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

※ 본 공고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. 끝.